
- 2026학년도 후기 -

정책대학원 신입생 대학원 생활 안내자료



목 차

① 대학 소개	2
② 과정 소개	4
1. 정책대학원 소개	4
2. 학과별 교육과정	5
3. 2026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	9
4. 2026학년도 2학기 수업시간표	11
5. 학사운영제도	12
6. 주요 학사운영 안내	15
7. 수강신청	18
8.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20
9. 학생증 발급	22
③ 대학생활(교내시설) 안내	23
1. 학산도서관 이용	23
2. 공연장 이용	24
3. 스포츠센터 이용	24
4. 주차 정기권 안내	24
[별첨1]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	25
[별첨2]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31
[별첨3]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40
[별첨4]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안내	41

■ 대학이념



○ 교육이념

홍익인간의 이념 하에 교양과 덕성과 능력을 고루 갖춘 지도적 한국인 상을 구현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교육목적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함으로써 자주적·창의적·민주적 인격을 갖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한다.

○ 교육목표

인간화·세계화·정보화의 바탕 위에서 전문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

■ 캠퍼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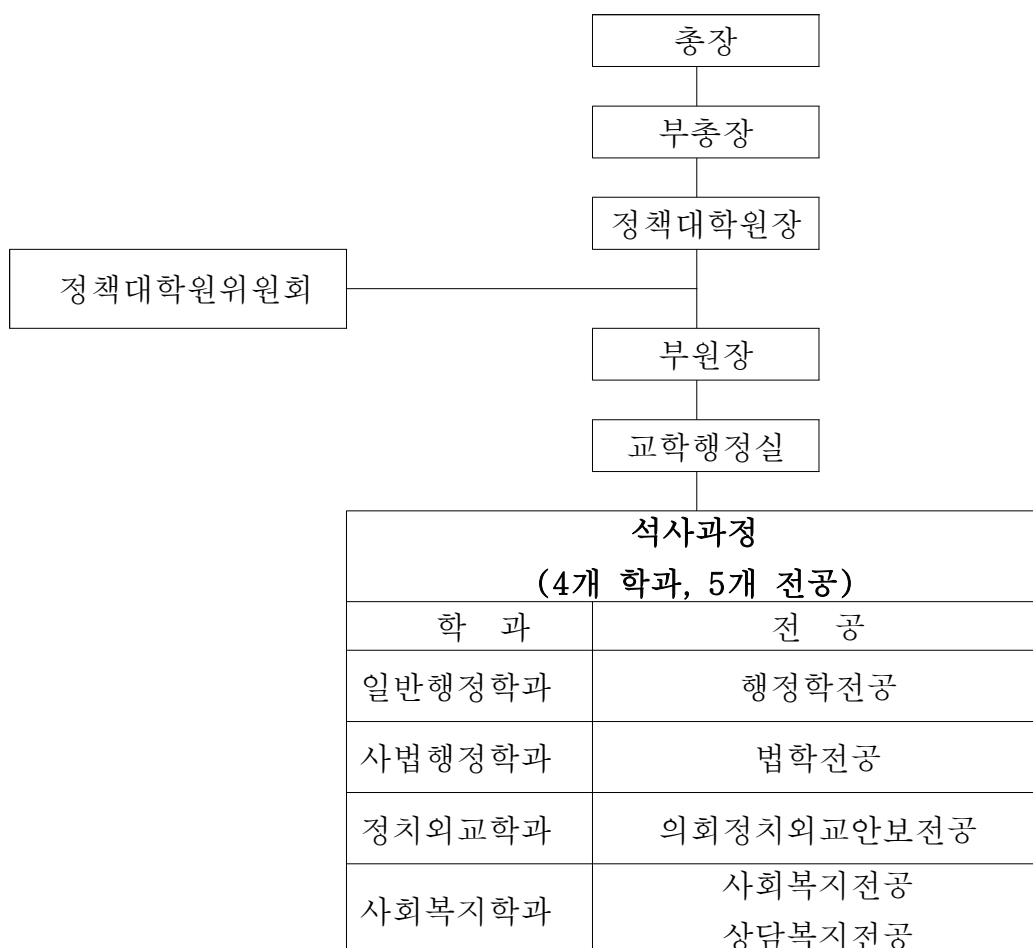
II 과정 소개

1 정책대학원 소개

■ 설립취지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은 대학교육의 기본정신에 따라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보다 심오하게 연구·교수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 관련 전문가와 지도급 관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 과정을 두고 공개강좌 과정으로 최고 관리자 과정을 두며, 정보화·세계화·지방화에 적실한 세부학과와 전공 그리고 특별강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 직제 및 기구



■ 일반행정학과

학과	전 공	전공필수	전 공 선 택	비고
일반 행정 학과	행정학전공	2과목(4학점)	논문학위제: 10과목(20학점) / 추가학점 이수제: 14과목(28학점)	
		행정학특강 사회과학방법론	인사행정세미나, 인간관계연구, 행정책임론, 관료제도론, 행정철학, 행정사, 정부예산론, 공기업론, 지방재정론, 정책학, 정책분석론, 정책평가론, 기획론, 복지정책론, 산업정책론, 행정계량분석,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이론, 사회과학영어, 논문지도법, 인사행정론, 조직관리론, 재무행정론	행정이론
			지방행정론, 지역사회개발론, 지방행정세미나, 도시행정론, 지방의회론, 지방재정론, 지방재정세미나, 도시정책론, 환경정책론, 사회과학영어, 논문지도법, 인사행정론, 조직관리론, 재무행정론	도시·지방 행정
			정보화사회와 전자정부, 인터넷 연구방법론, 정보화와 행정문화, 지역사회와 정보화, 재무행정론, 세계화와 정부혁신, 정보관리세미나, 정보기술활용론I, 정보기술활용론II, 정보관리론, 사회과학영어, 논문지도법, 인사행정론, 조직관리론	전자정부
			위기관리론, 위기관리와 거버넌스, 위기관리 리더십, 갈등관리론, 도시방재계획론, 테러리즘, 안전규제론, 안전진단론, 위기대응론, 재난관리 법·정책론, 산업안전관리론, 위기사례연구, 위기관리 세미나 및 실습, 사이버 범죄론, 경찰행정론, 한국경찰사, 비교경찰제도, 치안 법·정책론, 소방행정론, 소방행정실무, 구조구급론, 조직관리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사회과학영어, 논문지도법, 정책분석론, 정보화사회와전자정부론	위기관리

※ 폐지된 전공에 따른 교과목 구분은 수강 편의상 남겨 둠

행정학전공에서는 공직이나 공기업을 관리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조직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시민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공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학습하고 연구한다. 행정학의 전통적인 토대를 이루는 인사행정, 행정조직, 재무행정뿐만 아니라 정책학, 전자정부, 도시 및 지방행정, 위기관리 등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발전한 행정의 각 분야를 망라하여 공부하며, 각 분야 전문성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 사법행정학과

학과	전 공	전공필수	전 공 선 택	비 고
사법 행정 학과	법학전공	3과목(6학점)	논문학위제: 9과목(18학점) / 추가학점 이수제: 13과목(26학점)	
		행정법특강 법학방법론 법학특강	지방자치법론, 행정쟁송법론, 국제책임법론, 국제분쟁처리법론 법제이론, 사회변동과법, 재산법특수연구, 계약법연구, 회사법특수 연구, 보험법특수연구, 국제통상관계법연구, 국제계약법연구, 민사 소송법연구, 민사소송사례연구, 형사특별법, 형사판례연구, 범죄학, 형사정책, 부동산소유권론, 부동산사법	

장차 공직에 나아가려는 사람 및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법률지식과 행정관리의
실무지식을 전수할 목적으로 법학과 행정학을 통합하여 배움으로써 양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다. 법학지식을 함양함은 물론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위해 행정의 실무지식을
함양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정치외교학과

학과	전 공	전공필수	전 공 선 택	비 고
정치 외교 학과	의회정치 외교안보 전공	3과목(6학점)	논문학위제: 9과목(18학점) / 추가학점이수제: 13과목(26학점)	
		정치과정론세미나 현대국제관계와 한국 사회과학방법론	의회정치연구, 지방정치연구, 선거와 정당연구, 투표행태연구, 선거법과 선거운동, 현대사회와 NGO, 정치발전연구, 비교정부연구, 정치경제연구, 정치리더십연구, 현대사회와 안보연구, 현대국제관계와 안보연구, 안보전략세미나, 국방과 안보정책, 통일정책연구, 동아시아 국제관계세미나, 국제관계이론연구, 공공외교연구, 국제기구연구, 국제정치경제연구, 한국정치연구, 현대사회와 민주주의연구, 북한정치연구, 사회과학영어, 논문지도법	

의회정치외교안보전공에서는 국내 외 다양한 정치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학문으로, 민주주의, 선거와 정당, 의회정치, 정치경제, 정치리더십, 국제정치, 안보,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 북한 연구 등 다양한 교과목의 이슈를 통하여 국내외 정치 지도자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학과

학과	전 공	전공필수	전 공 선 택	비고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3과목(9학점)	5과목(15학점) / 9과목(27학점)	※전공선택 과목 중, 최소 6학점은 각 전공별로 개설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상담복지전공은 전공선택 과목 중 다음 중에서 2과목 이상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아동청소년상담, 미술놀이치료상담, 다문화상담, 위기개입, 상담심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아동청소년상담, 미술놀이치료상담, 다문화 상담이론과 실제, 위기개입,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논문지도법, 사회복지세미나, 사회복지통계, 사회복지시설관리론, 상담심리론, 주거복지론, 비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례관리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상담복지전공	4과목(12학점)	4과목(12학점) / 8과목(24학점)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 상담기술론	아동청소년상담, 미술놀이치료상담, 다문화 상담이론과 실제, 위기개입,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논문지도법, 사회복지세미나, 사회복지통계, 사회복지시설관리론, 상담심리론, 주거복지론, 비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례관리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은 현대사회의 각종 사회문제와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실천방법과 정책에 대한 학문이다.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전공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이나 유관기관의 종사자와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의 이론 및 실천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학의 기본 철학과 이론 및 실천능력을 균형있게 습득하고 지적인 이해와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학문적인 비판시각과 개인연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상담복지전공】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여성 등 사회복지 현장의 대상자분들에게 적합한 상담기술을 습득하여 정서적 지지와 문제해결 및 예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다.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상담 기술을 습득하여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숨은 욕구와 필요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맞춤형의 상담 기술을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년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세 부 일 정
2026년 8월							1	3(월)~7(금) 휴·복학신청 10(월)~14(금) 학위이수제 신청 15(토) 광복절 17(월) 대체공휴일 18(화)~21(금) 2학기 수강신청 21(금) 2026년 8월 학위수여식 24(월)~28(금) 2학기 등록(재학생 및 복학생)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월			1	2	3	4	5	1(화) 2학기 개강 1(화)~4(금) 신입생 전공신청서 제출 1(화)~7(월) 수강신청 변경 1(화)~11(금) 지도교수 배정신청서 제출 14(월)~28(월) (3차)연구계획서 제출 14(월)~28(월) (4차)중간보고서 제출 21(월)~28(월) (3차)종합시험 접수 24(목)~26(토) 추석 연휴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월					1	2	3	3(토) 개천절 5(월) 대체공휴일 5(월) 수업일수 1/3선 9(금) 한글날 12(월)~16(금) (4차)졸업시험 접수 12(월)~16(금) (3차)연구계획서 발표의견서 제출 12(월)~16(금) (4차)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제출 23(금) 수업일수 1/2선 23(금) (3차)종합시험 26(월)~30(금) (4차)학위논문심사신청서 제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월	1	2	3	4	5	6	7	9(월) 수업일수 2/3선 9(월)~20(금) 2027학년도 전기 신입학 원서접수 13(금), 20(금) (4차)졸업시험 23(월)~27(금) (4차)학위청구논문 예심보고서 제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1	2	3	4	5	8(화)~14(월) 2학기 기말시험 21(월)~24(목) (4차)학위논문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25(금) 성탄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년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세 부 일 정	
2027년 1월						1	2		
	3	4	5	6	7	8	9	1(금)	신청
	10	11	12	13	14	15	16	4(월)~6(수)	전과 신청
	17	18	19	20	21	22	23	4(월)~8(금)	(4차)학위청구논문 최종 인쇄본 제출
	24	25	26	27	28	29	30	4(월)~8(금)	신입생 등록
	31							11(월)~13(수)	재입학 신청
2월		1	2	3	4	5	6	1(월)~5(금)	휴·복학 신청
	7	8	9	10	11	12	13	1(월)~5(금)	학위이수제 신청
	14	15	16	17	18	19	20	6(토)~8(월)	설 연휴
	21	22	23	24	25	26	27	9(화)	대체공휴일
	28							15(월)~19(금)	1학기 수강신청
								19(금)	2027년 2월 학위수여식
								22(월)~26(금)	1학기 등록(재학생 및 복학생)

※ 상기 학사일정 계획은 정책대학원 학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일반행정학과 (4과목)

요일/교시	시간	교과목명	담당교수	이수구분	학점	강의실
월 야1·2B	18:30~20:15	재무행정론	박소영	전공선택	2	13-101
월 야3·4B	20:20~22:05	행정책임론	김동원	전공선택	2	13-101
수 야1·2B	18:30~20:15	정보화사회와 전자정부	서진완	전공선택	2	13-101
수 야3·4B	20:20~22:05	정책학	김국진	전공선택	2	13-101

2) 사법행정학과 (4과목)

요일/교시	시간	교과목명	담당교수	이수구분	학점	강의실
월 야1·2B	18:30~20:15	법학방법론	남상택	공통필수	2	13-321
월 야3·4B	20:20~22:05	형사정책	정배근	전공선택	2	13-321
수 야1·2B	18:30~20:15	지방자치법론	김수진	전공선택	2	13-321
수 야3·4B	20:20~22:05	국제계약법연구	장석영	전공선택	2	13-321

3) 사회복지학과 (12과목)

요일/교시	시간	교과목명	담당교수	이수구분	학점	강의실
월 야1~3	18:00~20:4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정선영	전공선택	3	13-206
월 야1~3	18:00~20:40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남은지	전공선택	3	13-207
월 야1~3	18:00~20:40	지역사회복지론	전용호	전공선택	3	13-208
월 야4~6	20:45~23:25	아동청소년상담	장현정	전공선택	3	13-206
월 야4~6	20:45~23:25	사회복지조사론	이인선	전공선택	3	13-207
월 야4~6	20:45~23:25	장애인복지론	전지혜	전공선택	3	13-208
수 야1~3	18:00~20:40	사회복지정책론	이영수	전공필수	3	13-204
수 야1~3	18:00~20:40	사회복지행정론	권정호	전공필수	3	13-206
수 야1~3	18:00~20:40	여성복지론	송다영	전공선택	3	13-207
수 야1~3	18:00~20:40	상담심리론	윤용희	전공선택	3	13-208
수 야4~6	20:45~23:25	사회복지실천론	원영미	전공필수	3	13-204
수 야4~6	20:45~23:25	사회복지현장실습	최상희	전공선택	3	13-205

4) 정치외교학과 (3과목)

요일/교시	시간	교과목명	담당교수	이수구분	학점	강의실
월 야1·2B	18:30~20:15	국제기구연구	이정우	전공선택	2	13-102
수 야1·2B	18:30~20:15	사회과학방법론	이효원	전공필수	2	13-102
수 야3·4B	20:20~22:05	정치발전연구	우병득	전공선택	2	13-102

■ **수업연한**: 석사학위과정(2년, 4학기)

■ **재학연한**: 10년(20학기)

■ **수업운영**: 야간 수업(월·수)

■ **학기당 이수학점**: 매 학기 9학점

■ **졸업(수료)학점**

○ 논문학위제 : 24학점 이상 + 논문심사 통과

○ 학점학위제 : 사회복지학과 36학점, 그 외 학과 32학점 이상

■ **출석점수** : 수업일수 1/3 이상 결석 시 해당 교과목 학점 취득 불가

■ **공결 기준** : 학기당 최대 3회까지 허용

공결사유	결석 허용 기간	필요서류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7일 · 1일 · 20일 · 5일 · 7일 · 5일 · 3일 · 3일 · 3일	· 출석인정원 · 관련 증빙자료
○ 입원 및 치료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 4주 이내	· 출석인정원 · 진단서
○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해당 기간	-
○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 출석인정원 · 관련 증빙자료
○ 공무출장 등 기타 회사 지시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 출석인정원 · 관련 증빙자료

■ 휴학

휴학구분	사유	휴학기간	신청기한	필요서류
일반휴학	개인사정에 의한 휴학	1년 이내	학기시작 30일 이내	-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한 휴학	1년 이내	사유발생 시	진단서
육아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1년 이내	사유발생 시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대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	군복무기간	사유발생 시	입영통지서

※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군 복무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함.

○ 복학기간 : 학기 초 등록기간 내

■ 제적

제적구분	사유	제적시기	필요서류
자원퇴학	개인사정에 의한 자원퇴학	상시 신청	자퇴원서
미복학제적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	학기 시작 30일 이후	-
미등록제적	기간 내 등록(수강신청·등록금납부)을 마치치 못한 자		-
재학연한 초과제적	재학 연한이 경과된 자	학기 시작 30일 이내	-

■ 장학제도

장학금구분	지급기준
성적장학금	- 2~4차 재학생 - 최우수: 직전 학기 학업성적 전체 학과 석차 1등 - 우수: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 4.2 이상이며 최우수장학금 수혜학과 제외 학과 중 차순위자
봉사장학금	- 2~4차 재학생 -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 원우회 간부로서 대학원 발전 기여가 인정되는자 - 각 학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특별장학금	- 신입생 및 재학생 -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3.0인 자(신입생 제외) - MOU 협약 체결기관 재직자,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재직기간 및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신청일 기준 연속적 기간에 한함) 이상인 자

※ 유의사항

- 휴학 예정자 지급 불가,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신청기간 내 서류 미도착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장학금 지급 인원, 비율 및 금액은 정책대학원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 최종결정
- 정책대학원 포탈 계좌번호 사전 입력 요청

: 포탈 ► 통합정보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기본관리 ► 개인학적조회 (학생) ► 오른쪽상단 “개인정보수정” ► 계좌 입력 후 저장

가. 차수별 주요 학사 안내

구분	주요 학사	대 상	준비사항
1차	전공 신청		
2차	학위이수제 신청		
	논문지도교수 배정 신청	- 논문학위제 이수 예정자	
3차	종합시험	- 16학점 이상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	- 응시과목 : 3과목
	논문연구계획서 발표		- 목차 첨부
4차	중간보고서 제출	- 연구계획서 발표한 자	
	논문 심사 신청서 제출	- 24학점 이수 - 종합시험, 연구계획서 합격한 자	- 심사비 150,000원 - 가제본 3부
	학위논문 제출	-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 5부 제출 (인준본 5부 포함)
	졸업시험	- 사회복지학과 36, 그 외 학과 32학점 이상 등록한 자 - 응시과목 · 사회복지학과: 5과목 · 그 외 학과: 3과목	

나. 학사 주요사항 안내

수강 및 수업에 관한 사항	- 수업연한은 2년(4학기) - 재학 연한은 10년이며, 10년 이내에 논문을 완성하여야만 학위취득 가능 -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최저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위논문 대신 졸업시험으로 학위를 취득코자 하면 32학점을 이수(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 - 수강신청 : 매 학기 9학점까지 가능 - 특별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
학위 신청 자격 시험 및 학위에 관한 사항	- 학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 종합시험 : 16학점 이상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만 응시할 수 있고, 전공필수과목 2과목을 포함하여 3과목 시험 실시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어야 합격 -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취득학점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며 학위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 학위논문제출방법 : 논문제출신청서 제출 → 논문심사신청서(심사료 150,000원) 제출 → 논문예비 및 본심사 - 졸업시험 : 32학점 이상(사회복지과는 36학점) 등록한 자로 시험과목은 3과목(사회복지과는 5과목), 합격기준은 70점 이상
휴학 복학 사항	- 휴학기간은 한 학기로 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 처리됨.
장 학 금	- 장학금 종류 · 성적장학금 :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 봉사장학금 : 원우회 간부로서 공로가 인정되는 자(원우회장, 사무국장 등) · 특별장학금 : 공무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신입생 포함) ※ 장학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장학금 신청시기 : 3월/9월 중 - 장학금 지급시기 : 4월/10월 중

다. 교학실 및 학과 사무실

1) 교 학 실 : 담당 조원경 Tel. 032)835-8302

2) 학과 사무실

학 과 명	조 교	전화번호	학 과 명	조 교	전화번호
일반행정학과	이해영	835-8330	정치외교학과	김은경	835-8340
사법행정학과	조윤성	835-8320	사회복지학과	이정명	835-8311
※ 수강 지도는 해당 학과에 문의하십시오.					

라. 제 62대 원우회 안내

1) 임원 현황

직 책	성 명	차 수	비 고
원 우 회 장	오 진 희	2	정치외교학과
사 무 국 장	박 상 민	2	일반행정학과
조 직 국 장	류 희 진	2	사회복지학과
학 술 정 보 국 장	장 서 은	2	사회복지학과

2) 원우회 사무실(13호관 202호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복사용지 및 커피 등의 수급은 원우회에서 자체 관리합니다.

7 수강신청

■ 수강신청 페이지 주소 : <http://gsugang.inu.ac.kr/gsukang/>

■ 로그인 계정 정보

- ID : 학번
- PW :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 수강신청 방법

1) 수강신청 페이지 로그인

인천대학교 대학원 수강신청

Course registration

LOGIN

아이디(학번)

포털비밀번호

* 아이디(학번) / 비밀번호는 포털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환경설정 및 유의사항

홈페이지

2) 로그인 후 첫화면

2018년도
2학기

학번
대학원

성명
학과

학점상태
차수

재학

전공과목

기타과목

선수과목

타학과과목

교목명(코드)조회

※ 주의(전공) : 검정역→주간학과 수업 / 교동역→이간학과 / 회역→미감강좌

* <수강신청> 개설했던 강좌 리스트 선택부분입니다.

- 학수번호가 달라도 교과목명이 같으면 동일 과목이므로 중복 수강입니다.
- 학과에 문의하여 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내역

(+수강신청 내역 (※ 삭제시 삭제할 과목을 클릭하세요))

회원서술권

순번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 및 교사(강의실)	개설학과(부)	재수강	교강사	원소
----	------	------	------	----	--------------	---------	-----	-----	----

3) 전공과목 신청

전공과목 선택 1

2018년도 2학기 학번 성명 학적상태 재학
대학원 학과 차수

전공과목 기타과목 선수과목 타학과과목 과목명(코드)조회 * 주의(전공): 경영학→주관학과 수업 / 고등학→미간학과 / 의학→미간과

과목 선택 2

학년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일어대부	요일 및 교시(강의실)	개설학과	교강사	신청
전학년 [적시]	전공선택								신청
전학년 [적시]	전공선택								신청
전학년 [적시]	전공선택								신청

> 수강신청내역

(*수강신청 내역 (*식재시 식재할 과목을 클릭하세요))

수강신청 여부 확인 3

순번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 및 교시(강의실)	개설학과(부)	제수경	교강사	취소
1	전공선택								취소

취소 시 취소버튼 선택

4) 기타과목(논문과목) 신청

기타과목 선택 1

2018년도 2학기 학번 성명 학적상태 재학
대학원 학과 차수

전공과목 기타과목 선수과목 타학과과목 과목명(코드)조회 * 주의(전공): 경영학→주관학과 수업 / 고등학→미간학과 / 의학→미간과

영역 선택 2

>> 과목선택 → 논문 선택 조회

과목 선택 3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 및 교시(강의실)	교강사	신청
논문						미간
논문						신청
논문						신청
논문						신청
논문						미간
논문						미간

> 수강신청내역

(*수강신청 내역 (*식재시 식재할 과목을 클릭하세요))

수강신청 여부 확인 4

순번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요일 및 교시(강의실)	개설학과(부)	제수경	교강사	취소
1	전공선택								취소

취소 시 취소버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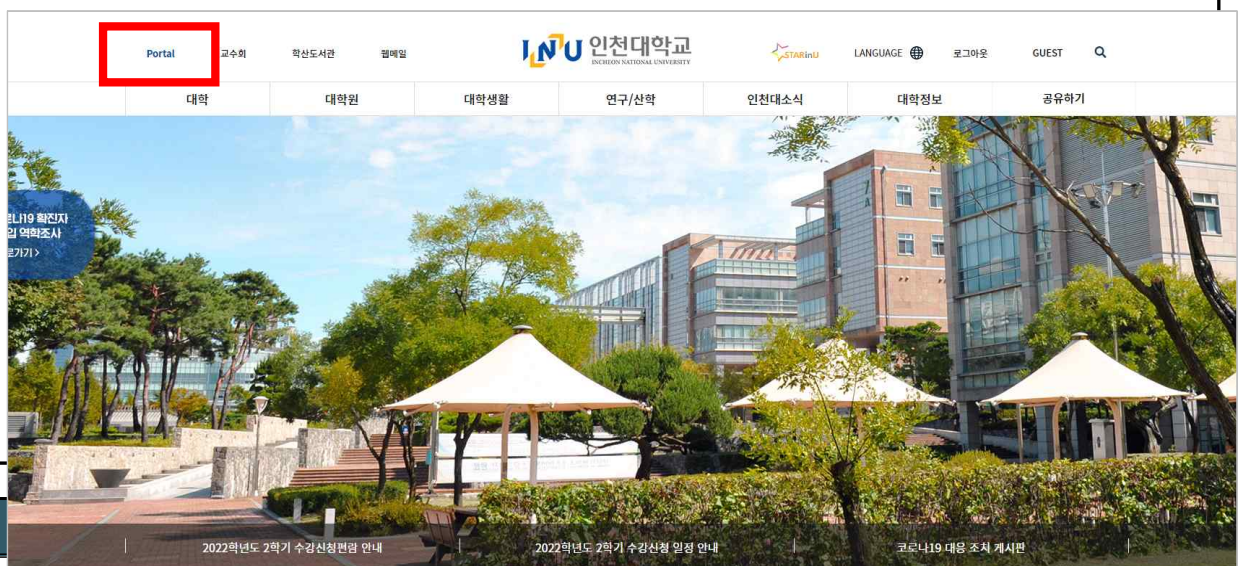
■ 통합정보시스템(Portal) 페이지 주소 : <http://portal.inu.ac.kr>

■ 로그인 계정 정보

- ID : 학번
- PW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최초 로그인 후 변경 권장)

■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방법

1)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메뉴 “Portal” 선택



■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대상 : 신입생, 재학생
- 카드종류 : 신한은행 S20 체크카드(후불 · 교통카드 가능)
- 발급비용 : 무료
- 발급기간 : 3 ~ 4주 소요
- 주요기능 : 도서관 시설 이용, 식당 ·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
- 발급방법 : 신한은행 “SOL” 어플에서 학생증 신청

■ 모바일 학생증 발급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대상 : 신입생, 재학생
- 카드종류 : 모바일 학생증
- 발급기간 : 발급 즉시 이용 가능
- 주요기능 : 도서관 시설 이용, 식당 ·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
- 발급방법 : 인천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어플 다운로드 후 이용



**동북아시아의 중심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지식센터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

교수와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효과적인 학술연구 및 학습 활동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송도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 학산도서관 홈페이지 주소 : <http://lib.inu.ac.kr>

■ 로그인 계정 정보

- ID : 학번
- PW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 제공서비스

- 소장자료 검색 : 키워드 검색과 전방일치 검색
- 대출연장(1회)과 예약 및 예약상황 조회, 대출상황조회, 이전 대출기록조회
- 희망도서 신청 : 1인당 연 3회, 회당 2권 신청 가능하며,
도서 열람 가능 시 SMS문자 서비스 제공
- 좌석현황 확인 : 지하 열람실 및 멀티미디어실
- 타 대학 열람의뢰서 신청 및 출력
- 전자정보의 이용 : 국내·외전자정보, 전자책, 오디오북, 사이버학습관 등

■ 대출규정

- 자료의 대출 및 연기
 - 대학원생 : 10권 30일
 - 대출 시 반드시 학생증 지참

- 대출자료 연기 : 1회에 한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30일까지 연기 가능
(대출기간 중에 신청 가능하며, 단 예약된 자료는 불가)
- 동일도서 2권 이상 대출 불가

2 공연장 이용

- 위치 : 인천대학교 강당 · 공연장(23호관)
- 활용 : 각종 행사(음악회, 전시회, 예식장 등) 이용
- 이용문의 : 시설관리팀 032-835-9515



3 스포츠센터 이용

- 위치 : 인천대학교 스포츠센터(20호관)
- 운영프로그램 : 골프/수영/헬스/스쿼시/아쿠아로빅/에어로빅/G.X/유소년스포츠



- 재학생 혜택 : 이용요금 10% 감면
- 이용문의 : 스포츠센터 032-835-4121

4 주차 정기권 안내

- 신청장소 : 주차관리실(지하주차장 14번 기둥 앞) 032-835-9799
- 정기권 종류 및 금액

소속구분	종류 및 금액	필요서류	비고
대학원생	- 월 권 : 20,000원 - 학기권 : 60,000원 - 년 권 : 100,000원	- 자동차등록증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월 권 : 월 단위 - 학기권 : 6개월 단위 · 1학기 : 3월 ~ 8월 · 2학기 : 9월 ~ 다음해 2월 - 년 권 : 1년 단위 · 3월 ~ 다음해 2월 · 9월 ~ 다음해 8월 ※ 월권신청 : 매월 25일경

【별첨1】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기본정신에 따라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보다 심오하게 연구·교수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 관련 전문가와 지도급 관리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제2조(명칭) 대학원의 명칭은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 9. 28.>

제3조(설치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대학원은 학위과정에서 설치·운영하는 교과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과과정의 공동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12.>

제4조(학과 및 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 및 학생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1. 12.>

② 대학원에는 각 학과별로 전공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업) ①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제로 운영한다.

② 대학원의 수업은 각 학과별 또는 전공별로 행한다.

제2장 입학

제6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재입학의 경우도 같다.

제7조(지원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1. 석사학위 과정

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개정 2014. 2. 5.>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4. 2. 5.>

2. 연구과정 :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제8조(외국인의 입학자격) ①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의 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2017. 7. 12.>

제9조(편입학) 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정책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할 수 있으며 그 시기와 절차는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4. 2. 5., 2016. 9. 28.>

제10조(재입학)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퇴학 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된 자는 제적된 학기로부터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적 전 동일과정에 한한다.

제10조의2(전과) ① 재학생은 재학년한 중 1회에 한하여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6. 24.>

②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학과의 동의를 얻어 전과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전입학과의 동의를 얻어 전과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3. 6. 24.>

③ 전과에 따른 이수과목의 인정은 전입학과에서 인정한 과목에 한한다. <신설 2003. 6. 24.>

제11조(직원의 입학)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입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졸업증명서(다만,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의 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 인정서로 한다)

3. 출신대학 학업성적 증명서

제13조(전형방법) 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과목은 논술고사 및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전형으로 대치할 수 있다.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구술시험만을 과할 수 있다.

② 대학원의 연구과정 입학전형은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3장 수업, 학점, 시험 및 학위수여

제14조(수업연한) ①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4학기),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 2. 5., 2023. 2. 14.>

② 추가학점이수를 통한 학위취득을 위해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4.>

제15조(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10년(2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의무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 24.>

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업등) ① 수업시간과 그 장소는 매 학기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대학원의 교과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장실습수업 또는 본교 타 대학원과 합동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이수과목) 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구분하며, 각 학과(전공)별 교과과정은 정책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1. 2., 2016. 9. 28., 2025. 1. 17.>

제18조(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취득해야 할 최저학점은 24학점으로 하고, 졸업시험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2학점으로 하되 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2014. 2. 5.>

② 연구과정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③ 교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매학기 학점) 학생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23., 2014. 2. 5.>

제20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말 그 시간에 수업한 범위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21조(학점인정) ①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2. 8.>

②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그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서 대학원의 설강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서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편입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④ 인턴십 연구과정은 1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 7. 12., 개정 2023. 2. 14.>

⑤ 그 밖에 인턴십 연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7. 12., 2023. 2. 14.>

제22조(성적등급)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수료 등) ①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대학원의 각 전공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학위신청 자격시험) ①대학원은 졸업에 앞서 학위신청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졸업시험을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2.>

② 삭제 <2024. 2. 22.>

②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과한다. <개정 2008. 1. 2., 2024. 2. 22., 2025. 1. 17.>

③석사학위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으로 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2. 22.>

제25조(학위수여) <개정 2025. 1. 17.> ① 학위수여 방식에는 논문학위제와 추가학점이수제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 17.>

② 논문학위제는 규정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의 제출시기·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9. 28., 2025. 1. 17.>

③ 추가학점이수제는 규정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추가 이수학점, 졸업시험의 응시자격 및 합격 조건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 17.>

제25조의2(졸업시험) ① 졸업시험학점취득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32학점(단, 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2014. 2. 5., 2024. 2. 22.>

②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32학점 이상 등록한 자로 하고, 시험과목은 학과에서 정하는 3과목 이상으로 하되, 사회복지학과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8. 22., 2014. 2. 5., 2024. 2. 22.>

③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불합격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신설 2003. 6. 24.>

제26조(학위수여) ① 대학원 학위수여 기준 및 학과별 학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12.>

가. 학위논문 제출자 :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신청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 심사를 통과한 자

나. 추가학점 신청자 :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을 합격한 자 <개정 2024. 2. 22.>

<개정 2019. 9. 16., 2023. 9. 1., 2023. 12. 11.>

②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27조(등록금) 대학원생은 수업연한동안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제28조(휴학과 복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2. 5.>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2. 5.>

③ 군 복무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2. 5.>

④ 복학은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5.>

제29조(제적) ①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퇴학원의 처리는 대학원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처리한다.

②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및 휴학기간 만료후 복학수속을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제5장 공개강좌, 위탁생 및 연구생

제30조(공개강좌) ① 공개강좌는 교양 또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이나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④ 공개강좌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위탁생)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제32조(연구생) ①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력고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2.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자 <개정 2014. 2. 5.>

②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장 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등

제33조(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등) ① 총장은 대학원 석사과정 및 공개강좌 과정의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서 인천대학교 및 인천광역시 등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정책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2017. 5. 30.>

②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으로서 인천대학교 건학정신이 투철하거나 학력이 우수한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34조(직제 및 교수) 대학원에 원장을 두고 학과별로 학과장과 전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35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에 정책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9. 28.>

② 위원회는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 1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제36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별첨2】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칙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5.>

제2장 입학

제2조(입학전형위원) 입학전형위원은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합격사정) 합격사정은 학과별 사정과 대학원위원회 사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4조(학과별 사정) 학과별 사정에 있어서는 학과교수회의에서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청한다.

제5조(대학원위원회 사정) 대학원위원회는 각 학과에서 제청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하에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1. 시험점수의 합격기준여부를 검토한다.
2. 학과별 재적인원을 참작하여 합격인원을 조정한다.
3. 학과별 사정에서 합격에 제청된 자라도 대학원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할 수 있다.
4. 학과별 사정에서 불합격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합격시킬 수 없다.

제6조(입학의 허가)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는 소정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입학이 허가된다.

제7조(재입학) ①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자는 등록기간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
2. 학점인정원
3. 재입학전 재학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수업, 학점, 시험 및 학위수여

제1절 수업 및 학점

제8조(학점) ①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15시간이상을 1학점으로 하며, 각 교과목의 학점은 2학점 또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2.8.>

② 학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3., 2016.10.5., 2023.12.11., 2025.1.17.>

(단위: 학점)

구 분	학 과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계
논문학위제	일반행정학과	4	20	24
	사법행정학과	4	20	
	정치외교학과	6	18	
	사회복지학과	9	15	
추가학점이수제	일반행정학과	4	28	32
	사법행정학과	4	28	
	정치외교학과	6	26	
	사회복지학과	9	27	36

③ 전공선택과목중 최소 6학점은 각 전공별 개설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3.>

제9조(교과과정 선정) 각 학과 학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과별·전공별 교과목을 선정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0조(교과과정의 개정) ① 확정된 교과과정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과정을 개정할 때에는 각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대학원장에게 제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교과목 개설) 각 학과 학과장은 개강 1개월 전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학기에 개설할 과목을 선정하고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1.17.>

제2절 수강신청, 전공선택 및 변경

제12조(수강신청) 대학원생은 매 학기초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신청 및 정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1. 삭제
2. 삭제

제13조(수강신청과목 변경) ① 수강신청 및 정정을 완료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을 인정한다. <개정 2025.1.17.>

1. 대학원 교수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개설과목을 폐강 또는 유사과목과 통폐합하는 경우 <개정 2025.1.17.>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학원장의 수강과목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수강과목변경원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7.>

③ 수강신청의 변경은 개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개정 2025.1.17.>

제14조(추가등록) ① 학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이 경과한 후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8.>

② 추가등록금은 수강하는 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8.>

제15조(전공선택 및 변경) ① 신입생은 1차 학기 수강신청 기간중에 전공분야를 선택하여 대학원

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17.>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2차 학기 또는 제3차 학기 등록기간내에 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성적 및 시험

제16조(성적계산) 학칙 제21조에 근거한 교과목별 성적은 시험성적과 출석성적을 합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제17조(출석성적) 제16조의 출석성적의 인정은 해당 학기 수업에의 출석이 강의일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결석사유의 인정) ①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과목당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에 참여하게 되어 결석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교과목의 교원은 해당 기간의 수업을 공결로 인정하여야 하며, 성적처리나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신설 2025.1.17.>

제19조(학점인정) 학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70점 이상만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20조(학점의 특별인정) 전공변경자 및 대학원에서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의 학점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학점을 특별히 인정할 수 있다.

1. 전공변경자의 이수학점은 새 전공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이를 인정한다.
2.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유사전공과목 3과목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의 범위는 6학점 이내로 한다.

제21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과정의 전공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기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한다.

제22조(수료학점 및 인정시기) ① 석사학위 과정의 수료는 4회등록을 필한 자로서 학위논문 제출자는 24학점 이상, 졸업시험 응시자는 32학점(단, 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학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과정수료인정학점)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기 위한 평균학점의 기준은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 학업성적의 평균성적을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성적정정) ① 교과목별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 소정의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성적정정원
2. 정정사유서
3. 시험답안지 등 성적근거자료

② 성적정정의 기간은 다음학기 개강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5조(결시신청)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험기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 결시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징집 또는 병무소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다만, 사본의 경우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빙서류

제26조(추가시험) 학칙 제20조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험으로서 각 교과목에 대한 추가 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행한다.

1. 추가시험의 과목, 기간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후 시행한다.
2.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시신청의 승인을 받은 자
 - 나. 전학기 교과목성적이 69점 이하인 자(다만, 출석미달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3. 추가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한하며, 응시기회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추가시험의 성적은 89점을 최고성적으로 한다.

제27조(학위신청자격시험) ① 학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신청자격시험의 과목, 기간(시간) 및 기타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매 학기초 1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공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 ②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에 대학원장이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24.2.22.>
 - ③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16학점 이상을 평균 80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로서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개정 2003.6.17., 2024.2.22., 2025.1.17.>
 - ④ 시험위원은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구비한 교원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⑤ 종합시험은 응시자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전공필수 2과목 이상을 포함한 3과목으로 하고, 배점은 각각 100점 만점이고 시간은 60분간으로 한다. <개정 2008.1.2., 2024.2.22.>
 - ⑥ 대학원장은 종합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2.22.>
 - ⑦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2.22.>
 1.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중 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24.2.22.>
 2. 종합시험의 응시과목중 불합격과목이 2과목 이상일 때에는 전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1과목일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24.2.22.>
- <개정 2024.2.22.> <항 삭제 2025.1.17.>
 <호 삭제 2025.1.17.>
 <개정 2024.2.22.> <호 삭제 2025.1.17.>

제4절 학위논문 및 졸업시험

제28조(학위논문제출자격 등) <개정 2025.1.17.> ① 석사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취득학점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며 학위신청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

2024.2.22.>

② 대학원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인준한다.

제28조의2(추가학점 이수제 신청) ① 추가학점 이수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2차 학기 등록 전까지 정해진 기간 내 학과장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7.>

② 학위논문제출을 통한 학위취득 혹은 추가학점 이수를 통한 학위취득 간의 변경 신청은 4차 학기 말까지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을 얻어 가능하며, 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신설 2025.1.17.>

제29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목의 선정 및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배정한다.

제30조(논문지도교수의 배정) <개정 2025.1.17.> ① 학생은 학과장과 협의하여 2차 학기에 논문지도교수 배정 신청을 하고, 논문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은 학생의 희망 및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17.>

<개정 2023.2.14.>×항 삭제 2025.1.17.>

<신설 2023.2.14.>×항 삭제 2025.1.17.>

제31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교수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전공교수가 논문지도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기간은 이에 준하지 아니한다.

제32조(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연구제목, 연구, 목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4차 학기(또는 3차 학기)에 작성·발표하고,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은 제1항의 연구계획서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논문제출 3월전에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중간보고서 제출) 제32조의 연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지도교수의 지도요지, 의견, 기타 진행사항을 기록한 학위논문 중간보고서를 4차학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제34조(학위논문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하여 영문초록을 첨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10.5.>

1.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초록을 앞에 영문초록은 뒤에

2.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초록을 앞에 국문초록은 뒤에

②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나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인접전공의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제35조(학위논문 제출시기 및 졸업시험 시행시기) ① 학위논문의 제출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 2회로 한다.

② 졸업시험은 32학점(단, 사회복지학과는 36학점)을 등록 신청한 자에 한하여 매년 5월과 11월에 시행한다. <개정 2014.1.22.>

제36조(학위논문제출 및 졸업시험응시 시한) 학위논문 심사 및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학연한 내에 재제출 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제37조(학위논문 제출절차) <개정 2025.1.17.>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에 논문제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2. 지도교수 추천서
3.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4부
4.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신설 2023.2.14.>

<항 삭제 2025.1.17.>

제38조(논문심사위원 및 졸업시험위원 선정) ①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② 대학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9.25.>

③ 졸업시험위원은 대학원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39조(논문심사위원장) ①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중에서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를 주재하고, 논문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있어서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40조(심사위원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해외여행, 질병, 사고, 신분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소정 양식에 의거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41조(논문의 예비심사) ①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한 학술이론의 타당성, 연구의 가치, 내용 및 체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술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심사한다.

②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발표하여 예비심사(구술시험 병행)를 받는다.

③ 논문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인용문장, 부논문,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⑤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내 완성이가능성을 판정한다.

⑥ 예비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이 부실하여 학기내 완성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킬 수 있다.

⑦ 예비심사의 결과는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2조(논문의 본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나를 검토하며 자구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43조(논문의 재심사)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1회에 한하여 1학기이상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내에 본 세칙에 의한 논문제출의 절차를 밟아서 재심사 또는 재시험을 받을 수 있다.

제44조(논문평가)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

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45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46조(논문심사결과보고 및 자격사정) ① 학위청구논문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의 결과를 지체 없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학위수여대상자의 자격을 사정한다.

제47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 및 편제, 서술방법 등은 대학원 논문작성법에 따른다.

제48조(학위논문 제출부수) ① 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은 소정의 기일 내에 4부(하드카버)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8.>

② 제1항의 논문중 3부는 심사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학위수여)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제50조(학위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1절 휴학 및 복학

제51조(휴학절차) 학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입대휴학자는 징·소집영장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다만, 사본에 의한 경우는 원본과 대조한 후 접수한다)
2.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자는 휴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4. 휴학원서

제52조(휴학시기 및 기간) ① 일반휴학은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대학원에 소정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② 군입대휴학자는 입영일자 10일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③ 일반휴학 기간중 입대한 자는 소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 대체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학기간은 한 학기로 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통산하여 여섯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외근무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하되 1회 휴학으로 본다. <개정 2011.2.8.>

제53조(복학절차) ① 휴학자가 복학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전에 다음 각 호의 복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2. 입대휴학자는 병적확인증

<호 삭제 2025.1.17.>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제적된 것으로 본다.

제54조(복학생 등록)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복학절차를 마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2절 징계, 퇴학 및 제적

제55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 및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 처분한다.

1. 학력위조 또는 학력부실자
2. 장학금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위조자
3. 학생의 신분을 탈선하여 본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학칙 및 대학원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이 제적 처리한다.

1. 자진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내에 복학절차를 필하지 않은 자
4.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

제5장 연구과정

제57조(연구과정의 목적) 연구과정은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9조(취득학점)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60조(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목) ①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② 연구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학점의 구분은 다음표에 의한다.

구 분 과 정	공통필수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계
연구과정	2학점(1과목)	10학점(5과목)	12학점(6과목)

제61조(수료증)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62조(연구보고서 제출) ① 대학원장은 연구생에게 지정된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고서의 체제와 양식은 대학원 보고서 작성법에 따른다.

③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한다.

제6장 장학금

- 제63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 선발시의 성적평가는 졸업(수료)학점 인정과목의 성적으로 하고 전학기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장학금 지급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64조(학과장) 학과장은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5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의 교수 및 부교수
2. 교내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교내의 전임강사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4. 각종 학술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제66조(교과목 담당제한) 동일교수가 담당할 수 있는 대학원의 교과목은 학기당 1과목(2학점 또는 3학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과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추가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1.2.8., 2025.1.17.>

제67조(강사제청) 교과운영상 교외의 자를 강사로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과장은 개강 1월 전에 시간강사제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학과장은 강사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간사) 대학원 교학행정실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개정 2014.1.22.>

제70조(보칙)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별첨3】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대학교정책대학원학칙 제33조 및 인천대학교정책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63조에 의거, 인천대학교정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7.2.24.>

제2조(적용범위)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대학원은 매 학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5.6.16.>

1. 성적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연구장학금 : 국내외 전공관련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한 자
3. 봉사장학금 : 원우회 간부로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4. 특별장학금 : 공직자 등 기타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8.1.2., 2017.5.1.>

제4조(장학생 사정)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은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원장이 시행한다.

제5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의 수혜희망자는 장학금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의 혜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이중 수혜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다.

제7조(장학생의 교체) 선발된 장학생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다른 적격한 장학생으로 교체할 수 있다.

【별첨4】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안내

(<http://www.iasw.or.kr> /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참고)

- **이수과목**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총 8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구 분	교 과 목	이수과목 (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2과목, 6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1. 기관실습

가)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나)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2)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나)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2. 실습세미나: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3.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비고: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기준

※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 학점: 3학점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 학교, 학생,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학생은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음.

1)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 근무

2)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 근무·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60시간 근무